

# 예산총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63,519,163	10,905,575
일반회계	335,216,150	10,056,485
특별회계	28,303,013	849,090
기타특별회계	28,303,013	849,090
상수도사업	1,638,590	49,158
하수도사업	1,200,530	36,016
수질개선	5,361,408	160,842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96,636	14,899
의료급여기금	652,843	19,585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37,375	16,121
소득특화사업	4,483,016	134,490
농공단지조성사업	196,480	5,894
공영개발사업	2,343,898	70,317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1,266,099	337,983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26,138	3,78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470,20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2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경비     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    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